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6월 10일 최민희의원 등 38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6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4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6.2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7.16.) 상정, 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24.9.3.) 상정, 축조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24.12.26.) 상정, 축조심사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25.1.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6.)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최민희의원)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제한된 소수의 신청인만 회의장 또는 별도의 공간에서 방청하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음.

그런 상황에서 5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한 2인으로만 운영되며, 위원회 회의는 대통령 지명 2인의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의사진행으로 일관된 요식행위로 전락되었고,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YTN 민영화 등 방송장악을 목적으로 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일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렸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마찬가지로 위원장을 비롯한 정부여당이 추천한 다수의 위원들에 의해 일방통행식 회의가 진행됨은 물론 소수 위원의 발언기회까지 제한하는 등 무법에 가까운 방식으로 회의가 이뤄지고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의 실상을 국민들이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도록 공개함으로써 회의 공개의 취지를 되살리고자 함. 특히 최근에는 회의 속기록이 사라지는 초유의 사건까지 벌어져, 회의를 인터넷으로 중계함으로써 속기록이 사라져 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함(안 제13조제6항 및 제22조제6항·제7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건오)

- 방통위와 방심위의 회의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고 방심위의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대통령 지명 2인만으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있고, 방심위에서 여당 추천을 받은 다수 위원이 일방적으로 의사결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회의 인터넷 중계 및 공개와 회의록 보존을 의무화하려는 입법취지와 함께 실제 인터넷 생중계를 위한 설비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봄.

4. 대체토론의 요지

- 방통위설치법이 발의된 이유는 방심위가 민간독립기구이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고, 류희림위원장에 대해 청부민원 사주 의혹, 가짜뉴스 신속 심의, 정치적으로 편향된 선방위 구성 등 제기된 문제가 많으며, 현재 판결에서도 방심위는 행정기관이고 처분성이 인정된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소위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해 주기 바람(한민수 위원).

- 권익위가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다시 방심위로 보낸 것은 부적절하고, 방심위가 위원장의 가족·지인 민원 사주 의혹, 사적 이해관계자 회피 의무 위반, 정권 비판·감시 민원에 대한 표적 심의·편파 징계, 긴급심의·단독부의 권한 남용, 내부 문제 제기한 직원에 대한 보복 인사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방심위가 민간독립 기구라는 이유로 감시·견제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방통위설치 법안이 발의된 것임(이훈기 위원).
- 방심위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였기 때문에 개정안이 발의된 것임(노종면 위원).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원장 김현)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개정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 5인 체제가 복원되면 정상화될 사안으로, 의결정족수를 두는 것은 또 다른 쟁점을 유발할 우려가 있고, 방통위원을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는 것은 검증 과정을 단축시키는 문제가 있으며, 방통위회의록 작성·보존 관련 사항도 기본규칙에 명시된 사안으로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며, 방심위는 초상권, 개인정보 침해, 불법·유해 콘텐츠

재확산 등의 문제를 심의하는데 이를 생중계하고 공개하는 것은 방심위의 기능 자체와 반하는 면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최형두 위원).

- 방심위 회의와 관련해 속기록이 사라지고 녹음기가 고장이 나는 등 불성실하고 무책임하게 운영된 점이 있어 제도적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고, 30일 이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은 이번 정부뿐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야당 후보에 대해 임명이 지연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 불비로 인한 문제를 막을 필요가 있음(김현 위원).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표결결과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1명)

8. 기타사항

입법청문회 실시(2024.6.21.)